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217호)

2023년 12월 12일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23. 11. 10.
- 나. 제출자 : 노미경 의원
- 다. 위원회 회부 : 2023. 11. 15.
- 라. 위원회 심사 : 2023. 11. 28.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노미경 의원)

가. 제안이유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돌봄을 부담하느라 학업과 진로, 일상 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1조~제3조)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지원사업,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안 제7조, 제8조)

- 업무의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안 제9조, 제10조)
- 중복지원 제한 및 준수사항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최병수)

-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 등이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청년에 대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가족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미래 준비 시기에 가족 부양 부담을 떠안아 빈고의 악순환에 빠지는 청소년·청년들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의식이 증가하고 있고, 부양·돌봄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따라 가족 돌봄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발표되고 있어서 울주군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의 어려움을 나누기 위하여 울주군만의 시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5. 소수의견 : 없음